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829

발의연월일: 2020. 12. 22.

발 의 자:이태규·정희용·김영식

이종성 • 권은희 • 김정재

송언석 · 허은아 · 김석기

백종헌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벌칙 규정도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등의 관리 소홀로 맹견 등이 사람을 공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유자등이 맹견 등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경우 법원이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동주택에서 맹견 사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동물로 인한 생명·신체 상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의 사육을 금지함(안 제13조의4 신설).
- 나. 법원은 소유자등이 맹견 등 대상등록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등을 선고할 수있도록 함(안 제13조의5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3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 누구든지 「주택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5(동물에 대한 소유권 상실 등) 법원은 소유자등이 제13조제1 항 및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 제한의 선고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사육권의 제한이 선고된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③ 제13조의5에 따라 사육권의 제한이 선고된 동물의 보호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소유자가 내야 한다.

제20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3조의5에 따라 법원이 동물의 소유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경우

제46조제2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13조의4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한 자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제2호의7을 제2호의8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소유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공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6개월 이내에 제13 조의4의 개정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개정법률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④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 ④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종 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u> <신 설></u>	제13조의4(공동주택에서의 맹견
	사육 금지) 누구든지 「주택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
	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하여서는
	<u>아니 된다.</u>
<u> <신 설></u>	제13조의5(동물에 대한 소유권
	<u>상실 등 선고) 법원은 소유자</u>
	등이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
	<u>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u>
	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경우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소유자등의 해
	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또는 사육권 제한의 선고를 할
	<u>수 있다.</u>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7 ④ (생 략) <u><신 설></u>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② 지(생 략)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보호비용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저 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 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4. (생 략)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	<u> </u>
④ (현행과 같음)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경	<u>성</u>
장은 제13조의5에 따라 사육급	<u>니</u>
의 제한이 선고된 동물의 년	己
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키	ξ]
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②	2)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의5에 따라 사육권의	긔
제한이 선고된 동물의 보호병	
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2	
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까?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_
	_
	_
	_
	_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
	_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6조(벌칙)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1. ~ 1의4. (생 략) <신 설>

2. • 3. (생략)

개정법률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7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다.

1. ~ 2의6. (생 략) <신 설>

2의7. (생략) 3. ~ 5. (생략) ② ~ ④ (생 략)

<u>5</u> . 제13	조의5에 띠	가라 법·	원이 동
물의	소유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을	선고하
<u>는</u> 경	<u> 우</u>		
제46조(벌	[칙] ① (현	변행과 >	같음)

1404	口(三)	<i>)</i> ①	(11)	0 2	E	П	,
(2)							

1. ~ 1의4. (현행과 같음) 1의5. 제13조의4를 위반하여 공 동주택에서 맹견을 사육한 자

2.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 제16977호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

1. ~ 2의6. (현행과 같음)

2의7.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 여 맹견에게 복종 훈련을 받 도록 하지 아니한 소유자

2의8. (현행 제2호의7과 같음)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